

예 산 총 칙

2014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10,663,813	12,319,914
일반회계	394,184,941	11,825,548
특별회계	16,478,872	494,366
기타특별회계	16,478,872	494,366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2,602,502	378,075
주택자금융자특별회계	301,698	9,051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618,485	18,555
의료보호비특별회계	1,258,720	37,762
복지기금특별회계	329,000	9,870
간척지구농지기금특별회계	79,394	2,382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	1,289,073	38,672

제 2 조 세입·세출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과 같다.

제 3 조 2014년도 3회추경예산의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4,182,597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의 지방채차입기본한도액은 9,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계획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